

6. 建設部와 그 所屬機關 職制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4,254號 1994. 5. 4

건설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설부에 총무과·국토계획국·토지국·도시국·주택국·건설기술국·수자원국·도로국 및 건설경제국을 둔다.

④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 각 1인을 둔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토계획국에 국토계획과·수도권계획과·지역계획과·토지이용계획과 및 입지계획과를 둔다.

제13조 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

제13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토지이용계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국토이용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구·발전

2. 각종 토지이용계획의 조정

3. 국토이용 관련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4.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관리등 입지의 협의 및 승인

5.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운영

6. 국토이용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⑦입지계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정책·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기초조사

3. 공업입지개발지침 수립·운영

4. 국가공업단지의 지정

5. 국가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 수립·시행 및 승인

6. 지방공업단지 지정의 승인

7. 공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도·감독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토지국에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과 및 토지전산과를 두고, 국장밑에 지가심의관 1인을 둔다.
-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토지전산과장은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기타의 과장은 서기관으로, 지가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③지가심의관은 지가조사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4조 제3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구역 및 신고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제14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지가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가조사에 관한 기획 및 총괄
 - 2. 지가체계 및 공시제도의 연구·발전
 - 3. 표준지의 선정·조사·평가 및 공시
 - 4. 지가동향조사에 관한 사항
 - 5. 표준비교표의 개발 및 관리·운용
 - 6.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확인
 - 7. 개별토지가격조사에 관한 교육 및 지도·감독
 - 8. 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
- ⑦토지전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가 및 토지거래 전산화에 관한 계획수립 및 연구
- 2. 지가 및 토지거래 전산망의 구성 및 운영
- 3. 지가 및 토지거래 정보의 전산처리
- 4. 지가산정 및 토지거래변동 프로그램의 개발
- 5. 지가 및 토지거래 통계자료의 작성 및 배포
- 6. 지가 및 토지거래 전산화에 관한 교육 및 지도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도시국에 도시계획과·도시정비과·녹지공원과·건축계획과·건축행정과·신도시기획과 및 신도시시설과를 두고, 국장밑에 건축기획관 1인을 둔다.
- ②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건축계획과장 및 신도시시설과장은 시설서기관으로, 기타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건축기획관은 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③신도시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신도시의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2. 신도시의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신도시건설과 관련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4. 신도시건설과 관련한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5. 신도시건설사업추진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

⑨신도시시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도시 기반시설·지원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협의 및 지원

2. 신도시의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 수립·시행

3. 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한 기술검토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건설기술국) ①건설기술국에 기술진흥과·건설기준과·건설감리과·건설관리과 및 건설기재과를 둔다.

②국장은 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기술진흥과장은 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건설감리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건설기준과장 및 건설관리과장은 시설서기관으로, 건설기재과장은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술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기술진흥 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조정

2. 건설기술연구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및 기술개발 투자등의 권고

3. 건설관련 신기술의 지정·관리

4. 건설품셈등에 관한 사항의 연구·발전

5. 건설기술자의 관리

6.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7. 기타 국내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건설기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기술용역의 관리·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2.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기준등의 제정 및 연구

3. 대형공사 입찰방법 및 일괄입찰·대안 입찰등에 관한 연구

4.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⑤건설감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 감리 및 감독제도의 운영·연구

2.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및 관리

3. 건설감리협회의 지도·감독

4. 외국감리전문회사의 관리

⑥건설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시공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조정

2.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의 연구

4.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제도의 연구

5. 건설공사 부실방지제도의 연구

6. 건설공사의 시공능력평가 및 우수건설업자 지정

⑦건설기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기계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

2. 건설기계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3. 건설공사의 기계화시공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

4. 건설기계 형식승인

5. 건설기계사업의 육성 및 지원

6. 건설자재 관련 기술정책의 수립 및 발전

7. 기전설비·플랜트건설분야 기술개발 및 지원

제1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수자원국에 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하천관리과·댐계획과 및 용수과를 둔다.

제18조 제3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용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3.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4.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조사·분석 및 자료의 유지·관리

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과 시설관리권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차관사업 및 해외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7.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시설기준의 운영 및 연구

8. 기타 수도법·하수도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환경처장관에 위탁하지 아니한 사항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 제1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도로국에 도로정책과·도로계획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 및 도로운영과를 둔다.

⑥도로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장·단기계획의 수립·조정·시행 및 지도·감독

2.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및 공법의 연구·발전

3. 도로상의 재해대책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4. 도로유지보수용 장비의 수급계획 수립·시행

5. 도로예정지·접도구역·부대시설의
관리 및 점용에 관한 사항

6. 도로대장의 작성 및 관리

⑦도로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시설개발사업의 장·단기계획 수립·조정

2.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도로병목지점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4. 도로표지설치기준작성 및 운영

5. 첨단도로교통체계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발전

6. 도로구조 보호를 위한 운행제한차량의 제한기준 수립·시행

제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하부조직) ①시험소에 서무과·토질시험과·기자재시험과·수공과 및 건축시험과를 둔다.

②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기자재시험과장은 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기타의 과장은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기자재시험과) 기자재시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목·구조물 및 토목재료에 관한 물리적·역학적 시험

2. 강재재료의 시험

3. 토목재료에 관한 화학적 시험

4. 건설기계의 성능시험 및 중기부품의

시험

5. 기계화시공에 관한 조사 및 시험

제45조를 삭제한다.

제54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국토관리청에 관리국·도로시설국·하천국·지역개발국(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한한다) 및 건설관리실을 둔다.

②관리국장은 서기관으로, 지역개발국장은 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도로시설국장·하천국장 및 건설관리실장은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관리국에 서무과·관리과·경리과 및 보상과를, 도로시설국에 도로계획과 및 도로공사를, 하천국에 하천계획과 및 하천공사를, 지역개발국에 계획조사과 및 지역개발과를 둔다.

제54조 제5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기타 청내 다른 국 및 건설관리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4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건설안전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용 재료의 시험 및 품질관리

2. 건설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

3.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점검 및 조사

[별표1]·[별표2]·[별표3]·[별표4]·

[별표6] 및 [별표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13293호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

- 부 칙 -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05인(2·3급2, 4급6, 4·5급1, 5급11, 6급13, 7급23, 8급3, 9급5, 기능직 41)중 별표1 건설부공무원정원표의 28인(2·3급1, 4급3, 4·5급1, 5급7, 6급8, 7급2, 기능직 6)은 환경처에 이체하고, 나머지 정원 77인(2·3급1, 4급3, 5급4, 6급5, 7급21,

8급3, 9급5, 기능직 3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③(도시국에 신설되는 과의 존속기간)
도시국에 신설되는 신도기획과 및 신도시시설과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중 23인(4급2, 5급8, 6급11, 기능직 2)은 1995년 1월 1일 감축된다. 이 경우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하게 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1]

건설부공무원정원표(제5조 관련)

총 계	615	비서(9급상당)	2
정무직계	2	일반직계	469
장 관	1	관리관	1
차 관	1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5
별정직계	8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차관보	2	시설부이사관	1
비상계획관(2급상당)	1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	
비상계획보좌관(5급상당)	1	당 또는 3급상당)	1
비서(6급상당)	1	시설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2
비서(7급상당)	1	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공업부이사	

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1	도시계획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2
부이사관	1	통신사무관	1
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1	행정주사	110
서기관	18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2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1	기계주사	4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전기주사	2
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22	토목주사	60
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1	건축주사	14
공업서기관	1	도시계획주사 또는 토목주사	3
시설서기관	7	전송주사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	행정주사보	19
서기관·시설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6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1
서기관·시설서기관·행정사무관·도시계획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	기계주사보	1
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기계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	전기주사보	1
행정사무관	84	토목주사보	16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건축주사보	4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2	도시계획주사보 또는 토목주사보	1
기계사무관	4	전송주사보	1
전기사무관	2	기능직계	136
토목사무관	45	8등급 통신원	1
건축사무관	12	9등급 통신원	2
		10등급 운전원	6
		10등급 위생원	2
		10등급 사무보조원	125

[별표2]

국립지리원공무원정원표(제24조 관련)

총계	144	행정서기	2
일반직계	52	측지서기	4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기능직계	92
시설부이사관	1	7등급 토목장	4
서기관	1	8등급 전기원	1
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1	8등급 토목원	11
시설서기관	2	9등급 토목원	5
행정사무관	4	9등급 기계원	4
측지사무원	6	10등급 교환원	2
행정주사	8	10등급 운전원	3
토목주사	2	10등급 기계원	11
측지주사	8	10등급 위생원	5
행정주사보	4	10등급 난방원	1
토목주사보	1	10등급 사무보조원	41
측지주사보	8	10등급 방호원	4

[별표3]

건설공무원교육원공무원정원표(제32조 관련)

총계	33	토목사무관	5
일반직계	22	건축사무관	1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행정주사	3
서기관	1	토목주사	1
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1	행정주사보	3
행정사무관	5	행정서기	1

기능직계	11	10등급 사무보조원	5
10등급 운전원	2	10등급 방호원	2
10등급 위생원	2		

[별표4]

국립건설시험소공무원정원표(제38조 관련)

총계	77	기계주사보	2
일반직계	47	토목주사보	4
공업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1	건축주사보	3
서기관	1	행정서기	1
시설서기관	3	토목서기	4
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1	기능직계	30
행정사무관	2	7등급 토목장	4
기계사무관	1	7등급 전기장	1
화공사무관	2	8등급 토목원	4
토목사무관	5	8등급 건축원	1
건축사무관	2	9등급 기계원	1
기계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1	10등급 교환원	1
행정주사	2	10등급 전기원	1
기계주사	2	10등급 기계원	1
화공주사	2	10등급 운전원	2
토목주사	4	10등급 위생원	2
건축주사	2	10등급 사무보조원	7
행정주사보	2	10등급 방호원	5

[별표6]

지방국토관리청·제주개발건설사무소 및 홍수통제소공무원정원표

(제52조 관련)

총계	1,971	행정주사 또는 토목주사	2
일반직계	804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5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서울·부산지방국토 관리청장)	2	기계주사	8
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원주· 대전·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	3	전기주사	3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또는 정보통 신부이사관(한강홍수통제소장)	1	토목주사	151
서기관	5	건축주사	7
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7	전송주사	6
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 기관	2	행정주사보	60
시설서기관	21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5
행정사무관	34	토목주사보	168
행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14	건축주사보	7
행정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통신사 무관	2	기계주사보	26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전기주사보	3
토목사무관	39	전송주사보	9
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5	행정서기	45
통신사무관	3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8급상당)	1
행정주사	59	토목서기	47
		기계서기	3
		전기서기	6
		전송서기	1
		행정서기보	17
		토목서기보	25
		기계서기보	1

기능직계	1,167	10등급 통신원	7
8등급 기계원	172	10등급 교환원	10
8등급 전기원	1	10등급 전기원	3
8등급 통신원	1	10등급 난방원	6
9등급 토목원	27	10등급 선원	1
9등급 기계원	12	10등급 운전원	390
9등급 통신원	32	10등급 위생원	36
10등급 토목원	28	10등급 사무보조원	218
10등급 기계원	154	10등급 방호원	69

[별표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공무원정원표(제66조 관련)

총계	30	행정주사	9
별정직계	1	행정주사보	7
상임위원(1급상당)	1	기능직계	6
일반직계	23	10등급 사무보조원	5
서기관	1	10등급 운전원	1
행정사무관	6		

□ 개정이유 □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유사·중복조직을 통폐합하고, 물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라 상·하수도 관련조직을 환경처로 이관하며,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일부조직을 보강하는 등 건설부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조직인 신도시건설기획관(2급)은 그 업무가 일부완료됨에 따라 조기 폐지하고 잔여업무수행을 위하여 도시국에 신도시기획과와 신도시시설과를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함(영 제10조 및 제61조).
- 나. 지가조사국과 토지국을 통합하여 토지국으로 개편하고, 토지국에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과 및 토지전산과를 두며, 지가조사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장밑에 지가심의관(3급)을 두고, 토지국의 입지계획과를 국토계획국에 이관함(영 제13조 내지 제15조).
- 다. 건설시장개방등 건설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부실시공 방지등 건설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관리관을 건설기술국으로 개편하여 기술진흥과·건설기준과·건설감리과·건설관리과 및 건설기재과를 둠(영 제17조의2).
- 라. 물관리기능체계 조정에 따라 상·하수도국을 폐지하여 환경처로 이관하되 건설부가 계속 관장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자원국에 용수관을 설치함(영 제18조 및 제19조).
- 마. 첨단도로교통체계의 개발·운영등 도로운영기능 보강을 위하여 도로국에 도로운영과를 설치함(영 제20조).
- 바. 국립건설시험소의 재료시험과와 기계시험과를 통합하여 기자재시험과로 개편함(영 제42조).
- 사.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으로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감독업무를 민간책임감리로 전환함에 따라 공사감독인력이 감축되어 이리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공사2과를 폐지하고 인원 57인을 감축함(영 제54조).
- 아. 부실방지기능의 강화 및 각종시설물의 안전관리이행실태 점검을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 시험실을 건설관리실로 개편하고 전담인력 30인을 보강함(영 제54조).
- 자. 정원 105인(2·3급 2, 4급 6, 4·5급 1, 5급 11, 6급 13, 7급 23, 8급 3, 9급 5, 기능직 41)을 감축하되 이중 28인(2·3급 1, 4급 3, 4급·5급 1, 5급 7, 6급 8, 7급 2, 기능직 6)은 환경처로 이관함(영별표 및 부칙)

〈법제처 제공〉